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법률 19882호, 2024. 1. 2. 일부개정, 2024. 7. 3. 시행)에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·증식·보존 등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 등을 국가희귀·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4. 26 ~ 5. 20.)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조사 및 수집
2.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
3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·분류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및 연구
4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·관리
5. 증식 개체의 보급, 증식 개체를 이용한 자생지 복원 및 모니터링
6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이용, 품종개발 및 보급
7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전시
8. 그 밖에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업

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(이하 “보전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
제8조의3제1항 중 “별표 2의2와”를 “별표 2의3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 2의2”를 “별표 2의3”으로 한다.

제8조의4제2항 중 “별표 2의3과”를 “별표 2의4와”로 한다.

제8조의6부터 제8조의15까지를 각각 제8조의7부터 제8조의16까지로 하고,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6(정원에서의 금지행위)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
2.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3.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
4.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5.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,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
6.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

7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다만,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, 장애인·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8 그 밖에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

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은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·수집·공표에 관한 권한
2. 법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·비용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

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4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경우	법 제24조제1항제1호	50	70	100
나. 법 제1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1호	10	10	10

다. 법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,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	법 제24조제1항제1의2호	50	70	100
리. 법 제18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2호	50	70	100
마. 법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	법 제24조제1항제2호	50	70	100
바. 법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 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4조제1항제3호	50	70	100
사.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목원 시설을 훼손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1호	10	10	10
아.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1호	5	5	5
자.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1호	5	5	5
차.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야영 행위,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1호	10	10	10
카. 제8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를 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1호	5	5	5
타. 제8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을 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1호	10	10	10
파. 제8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. 다만,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, 장애인·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또는 공무로 출입한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4조제2항제1호	5	5	5
하. 제8조의2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애완 동물과 함께 입장한 경우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한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4조제2항제1호	5	5	5

거. 제8조의2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1호	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		
너. 제8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2호	5	5	5
더. 제8조의6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2호	5	5	5
러. 제8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정원에 입장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2호	5	5	5
머. 제8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)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2호	5	5	5
버. 제8조의6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행위,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2호	10	10	10
서. 제8조의6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를 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2호	5	5	5
어. 제8조의6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. 다만,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, 장애인·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또는 공무로 출입한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4조제2항제2호	5	5	5
저. 제8조의6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24조제2항제2호	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		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의2]

보전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(제7조의3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,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3조의3 제3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13조의3 제3항제2호	경고	업무 정지 3개월	지정 취소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3조의3 제3항제3호	경고	지정 취소	
라.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	법 제13조의3 제3항제4호	경고	업무 정지 3개월	지정 취소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u> <u>1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조사 및 수집</u> <u>2.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</u> <u>3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·분류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유전자분석 및 연구</u> <u>4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존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개체의 보유·관리</u> <u>5. 증식 개체의 보급, 증식 개체를 이용한 자생지 복원 및 모니터링</u> <u>6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이용, 품종개발 및 보급</u> <u>7.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존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전시</u>

제8조의3(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)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제8조의4(정원의 등록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등의 기준은

8. 그 밖에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업

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(이하 “보전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
제8조의3(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) ① -----

----- 별표 2의3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별표 2의3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4(정원의 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별표 2의3과 같다.

③ (생 략)

<신 설>

별표 2의4와 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6(정원에서의 금지행위)

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

2.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
3.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

4.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
5.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,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

6.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

7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

제8조의6 ~ 제8조의15 (생략) 제1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.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</u> <u>다만,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, 장애인·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</u> <u>8 그 밖에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</u> ② <u>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은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</u> 제8조의7 ~ 제8조의16 (현행 제8조의6부터 제8조의15까지와 같음) 제1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. 1. <u>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·수집·공표에 관한 권한</u> 2. <u>법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·비용 지원 및 지정</u>
---	---

<u>1.</u> ~ <u>4.</u> (생략) ② (생략)	<u>취소 등에 관한 권한</u> <u>3.</u> ~ <u>6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48